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418
----------	-----

2024. 10. 14.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4. 10. 11. 강남구청장(기획예산과)

나. 상정의결

- 제32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4. 10. 14.)

“ 원안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기획경제국장 김하성)

지방공기업평가원에 2025년도 출연 예정인 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강남구의회의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나. 출연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11
-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요구(안) 협의 결과 알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2190호(2024. 8. 9.)

다. 출연내용 :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를 위한 재정지원

라. 출 연 금 : 21,200천원

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25 요구액	2024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306-01	출연금	21,200	21,200	0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21,200	21,200	0	-

바. 수정 제출

- 수정내용 : 안전명 수정

○ (수정 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2024. 9. 30. 제출)

○ (수정 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2024. 10. 10. 제출)

- 수정사유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 9. 30. 제322회 임시회에 상정 예정된 안전의 명칭 오기가 있어 기존 안전을 철회하고, 이에 갈음하여 제출함.

4. 참고 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지방공기업법」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다. 합 의 : 해당없음

5.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이주현)

가. 출연 취지 및 배경

○ 이 안전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을 위하여 강남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구청장이 제출한 동의안임.

○ 「지방공기업법」 개정

- 행정자치부는 2015년 3월 지방공기업 종합혁신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지방공기업의 과도한 부채와 방만한 경영 등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제도혁신, 구조개혁, 부채감축 등 3대 분야에 걸친 8개 중점과제를 제시하였음. 이
원화 되어있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주체를 행정자치부로 일원화하고, 경영평가
환류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음.

- 2015년 12월에는 지방공기업 관련 정책 연구,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등을 전
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 전문평가기관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
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을 개정하였음.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¹⁾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
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임.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주요 업무 >

- 사업대상: 지방공기업
 - 지방직영기업(지방자치단체가 직접경영)
 - 지방공사, 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가 간접경영)
- 사업내용: 경영평가 및 경영진단, 설립·투자 타당성 검토, 정책연구, 임직원
교육 등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업
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음.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제1항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은 각 지방자치단
체 등에게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
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제3항에 따
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함.

○ 안건 철회 및 제출

- 지방자치단체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므로²⁾ 그

1)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①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에 대한 교
육 등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지방재정법

출연 여부에 대한 의결을 위하여 지방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며,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는 출연금 요구서와는 구분됨.

- 강남구의회 제322회 임시회에 구청장은 기존의 관행대로 안건 명칭을 2024년 9월 30일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이라고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이 안건의 경우 구청장이 지방의회에게 출연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므로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이 적합한 명칭으로 확인되어, 2024년 10월 10일 기존 안건을 철회하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안건 명칭 오기로 인한 안건 철회 및 제출 >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2024. 9. 30. 제출)
↓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 (2024. 10. 10. 철회)
↓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2024. 10. 10. 제출)

- 의안은 안의 형식에 하자가 없고, 발의·제안 또는 제출의 절차가 적법할 것이라는 의안 성립의 일반 요건을 갖추어야 함.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의 규칙」에 따르면 의안에 관한 원칙은 다음과 같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의 규칙

제18조(의안의 제출·제안·발의) ② 의안은 매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의사일정으로 상정할 수 있다.

- 안건 명칭 오기(誤記)는 의안의 성립 요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 중 하나이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의사일정으로 상정을 할 수 있음.

○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평가 대상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지방공기업은 1999년 강남구가 100% 출자하여 설립한 ‘강남구도시관리공단’ 1곳임.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공기관 >

- 지방공기업: 강남구도시관리공단

나. 검토 내용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요구서

- 2025년 출연금 요구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마련된 출연금 편성기준을 적용하여 작성됨.

< 출연금 편성기준 규정 및 항목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요구(안) 협의 결과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190(2024.8.13.)

2025년도 출연금 편성기준³⁾

- 시·도 : 재정력지수(50%) 및 공기업 수(50%)
- 지방공사·공단 : 매출액(50%), 직원수(30%), 자산(20%)

-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대한 출연금 산정요소 및 출연금 편성기준 적용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강남구에 적용되는 출연금 산정요소 >

- 적용대상: 강남도시관리공단

3) 행정안전부·지방공기업평가원, 2024. 7. 11., 2024년 제1차 지방공기업 실무협의회 협의사항.

※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 2023. 12. 31. 공시 기준
 직원 수 합계: 584명 / 매출액: 약 350억원 / 자산: 약 25억원

• 직원 수 합계: 584명

(단위: 명)

(단위: 명)	2019	2020	2021	2022	2023
임원	7	7	7	10	8
정규직	264	290	309	314	323
무기계약직	15	15	17	13	11
비정규직	117	205	151	183	183
소속외	37	47	52	64	67
인원 합계	433	557	529	574	584

• 매출액: 약 350억원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매출액	22,729	26,182	29,776	33,512	35,049

• 자산: 약 25억원

(단위: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자산	2,035	1,905	2,092	3,042	2,534



< 강남구에 출연금 편성기준을 적용한 결과 >

구간	구간별 산정금액 (천원)	직원수 (명)	가중치	매출액 (억원)	가중치	자산 (억원)	가중치
0.5	1,500	50명 이하	-	-	0.5	-	0.2
1	9,000	51 ~ 150명		10억원 미만		10억원 미만	
2	18,000	151 ~ 300명	10억원이상 ~ 100억원 미만	10억원이상 ~ 100억원 미만			
3	27,000	301명 ~ 1,000명	100억원이상 ~ 500억원 미만	100억원이상 ~ 500억원 미만			
4	36,000	1,001명 ~ 2,000명	500억원이상 ~ 1,000억원 미만	500억원이상 ~ 1,000억원 미만			
5	45,000	2,001명 이상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이상			

$$\{ \text{직원수 } (27,000\text{천원} \times 0.3) + \text{매출액 } (27,000\text{천원} \times 0.5) + \text{자산 } (18,000\text{천원} \times 0.2) \} - \text{기초 감경 } (4,000\text{천원}) = 21,200\text{천원}$$

직원수(0.3)		매출액(0.5)		자산(0.2)		기초 감경 (천원)	'25년 배정액 (천원)
구간	금액(천원)	구간	금액(천원)	구간	금액(천원)		
3	8,100	3	13,500	2	3,600	-4,000	21,200

다. 종합 의견

○ 출연 목적

-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는 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3항4)에 따른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게 출연하는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음.

<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목적 >

- 지방공기업평가원의 본연의 목적에 따른 업무수행 지원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 관련 정책의 연구, 임직원 교육 등
 -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원활화
- 법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하여 출연하는 것이 강제사항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는 출연금 요구안 협의 절차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분담하는 방식으로 출연금 편성기준이 정하여지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 산출내역을 확인하면서 그 출연 목적이 잘 달성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 출연 절차

- 위의 사항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이 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⁵⁾

4)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③ 평가원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된 출연금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과 지방

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목록은 다음과 같음.

< 법에 따른 출연금 요구서 첨부 자료 >

(2024년 8월 기준)

-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계획서
-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추정 재무상태표
-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추정 손익계산서

[붙임 1]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계획서 중 사업총괄표

[붙임 2]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계획서 중 세입·세출 전망

[붙임 3]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추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 지방의회 의결을 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법적 절차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의 원본을 지방의회에 공유하여야 한다고 보임. 요약본을 제공하는 취지는 긍정적이지만, 원본의 경우 지방의회가 요청하여야 비로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의결을 구하기 위하여 안전을 제출하는 때에 동의안에 원본 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됨.
- 이번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규모는 2025년 출연금 편성기준에 따른 것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는 수신한 출연금 요구서를 기초로 예산을 검토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출연금예산을 확정된 후 그 확정된 결과를 지방공기업평가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이러한 절차를 거쳐 받은 출연금을 고유사업 및 운영경비로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음.

[붙임 6] 최근 5개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현황

공기업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출연금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8월 31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재무상태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

- 그러므로 이후 강남구는 이번에 출연한 출연금이 잘 사용되는지, 출연 목적에 부합하게 지방공기업이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를 효과적으로 받고 있는지 유의하여 모니터링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관계 법령 및 규정

지방재정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591호]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 2024. 2. 17.] [법률 제19634호]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시행 2024. 6. 13.] [대통령령 제34533호]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306 - 01 출연금 (p.111)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붙임 1]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계획서 중 사업총괄표

(지방공기업평가원, 2024. 8. 기준)

2025년 사업총괄표

사업명	기간	사업내용	비고
정 책 연 구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책연구과제 수행(14개 과제 내외) 	
컨 설 팅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층·맞춤형 컨설팅(20개 기관 내외)* 집단 컨설팅(80개 기관 내외) * 수요조사 후, 공통주제 접수 시 「집단컨설팅」으로 전환하여 추진 	100개 기관
경 영 평 가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행안부 위탁(경영평가 168개 기관, 진단 7개 기관) 신설 4개 기관, 피드백컨설팅 10개 기관 고객만족도(CS)조사(388개 기관) 지방공기업편람 개편 연구 및 분석 지방출자·출연 제안모델 작성 	
타 당 성 검 토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22개 과제) 지방공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4개 과제) 지방출자·출연기관 설립타당성 검토(2개 과제) 타법인 출자사업 타당성 검토(2개 과제) 	30개 과제
교 육 연 수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과정(390명) 지방공사·공단과정(2,700명) 기관 공통과정(5,770명) 출자·출연기관 과정(920명) 특별 및 맞춤형과정 등(4,220명) 이러닝(300,000명) 	314,000명
시도 지원사업 및 경 영지원	연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부고객만족도(ESI)조사(125개 기관 내외) 지방공공기관 상시 자문(법무, 인사·노무, 회계·세무, 계약 등) 및 사례집 발간 지방공기업 각종협의회 지원·운영 박람회 등 기타 지방공기업 지원사업 지방공공기관 정책동향 계간지 지방공공기관지(4회), 뉴스레터(12회) 발간 	

[붙임 2]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사업계획서 중 세입·세출 전망

(지방공기업평가원, 2024. 8. 기준)

2025년 세부 세입·세출 전망

< 세 입 >

(단위 : 천원)

항 목	수입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출 연 금	4,679,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도 출연금(17개 시·도) : 1,002,000 지방공사·공단 출연금(158개 기관) : 3,677,600 	
경 영 평 가	3,346,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영평가 행정안전부 위탁사업비 	24년 실계약금액
고 객 만 족 도 조 사	2,071,6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 수수료(388개 기관) 	
타 당 성 조 사	2,440,0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투자사업 타당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2개 과제 × 80,000(단가) = 1,760,000 지방공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개 과제 × 90,000(단가) = 360,000 지방출자·출연 설립 타당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과제 × 80,000(단가) = 160,000 타법인 출자사업 타당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개 과제 × 80,000(단가) = 160,000 	
교 육 연 수	2,698,7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과정(390명) : 83,250천원 지방공사·공단과정(2,700명) : 627,500천원 기관 공통과정(5,770명) : 1,548,200천원 출자·출연기관 과정(920명) : 284,750천원 특별 및 맞춤형 과정(4,220명) : 155,000천원 	
기 타 수 입 등	151,8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대료 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700 × 2층 × 2월 = 66,800 운영자금 이자 : 85,000 	
합 계	15,387,700		

※ 세입·세출예산 차이 204,000천원은 주요사업 실적 증대 및 경상경비 절감 등을 통한 평가원 자구책 마련으로 충당할 계획

< 세 출 >

(단위 : 천원)

항 목	지출 예산액	산출근거	비고
경 영 평 가 사 업 비	1,982,205	◦ 보상금, 여비, 회의비 등 '24년 당초예산 적용	
고 객 만 족 도 조 사 비	1,517,300	◦ 실사비, 여비, 수용비 등 '24년 당초예산 적용	
타 당 성 조 사 사 업 비	942,000	◦ 보상금, 여비, 회의비, 수용비 등	
교 육 연 수 사 업 비	1,457,263	◦ 강사수당, 수수료, 수용비, 여비 등 '24년 지출예산 비율 적용(무료교육 확대) ◦ 교육운영시스템 고도화 구축비(3억)	
정 책 연 구	253,560	◦ 정책연구 14건 내외 수행, 외부 인건비 등	
컨 설 팅	682,000	◦ 심층·맞춤형·집단 컨설팅 100건 수행 등 ◦ 상시자문 및 사례집 제작 등	
정 책 포 럼	10,000	◦ 학회 토론·발표수당, 대관료 등	
지 방 공 기 업 발 전 지원사 업 비	279,469	◦ 지방공공기관의 날 포상, 통계집 지원 등	
기 타 지원사 업	127,000	◦ 조찬포럼, 지방공기업 각종 협의회, 혁신박람회 등 지원	
인 건 비	5,149,073	◦ 기본연봉, 평가급 등 *총 77명	
직 무 수 행 경 비	135,000	◦ 직책급 업무추진비(실·팀장)	
퇴 직 급 여	500,000	◦ 퇴직지불준비금	
기 본 운 영 비 등	2,369,435	◦ 기본운영비(공통수용비, 수당, 사회보험부담금, 여비, 파견수당, 교육훈련비, 복리후생비 등) ◦ 정보화사업비(유지보수 등), 청사관리비	
기 타 비 용	56,420	◦ 공기구 : 51,400(컴퓨터, 모니터, 노트북 등) ◦ 비 품 : 5,020(캐비닛, 이동서랍 등)	
예 비 비	130,975		
합 계	15,591,700		

[붙임 3]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추정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지방공기업평가원, 2024. 8. 기준)

□ 2025년 추정 재무상태표

(단위: 백만원)

과 목	2023년	2024년	2025년	과 목	2023년	2024년	2025년
1. 유동자산	5,404	5,417	5,785	1. 유동부채	1,319	1,340	1,353
- 당좌자산 ¹⁾	5,404	5,417	5,785	2. 비유동부채 ⁵⁾	347	347	347
2. 비유동자산	16,021	16,320	16,210	부 채 총 계	1,666	1,687	1,700
- 투자자산 ²⁾	359	359	359	1. 기본재산	12,227	12,227	12,227
- 유형자산 ³⁾	15,408	15,023	14,948	2. 자본잉여금	3,751	3,751	3,751
- 무형자산 ⁴⁾	16	700	665	3. 이익잉여금	3,781	4,072	4,317
- 기타비유동자산	238	238	238	자 본 총 계	19,759	20,050	20,295
자 산 총 계	21,425	21,737	21,995	부채및자본총계	21,425	21,737	21,995

¹⁾ 당 좌 자 산 : 운영자금 등

²⁾ 투 자 자 산 : 퇴직연금운용자산

³⁾ 유 형 자 산 : 토지, 건물, 각종 비품 등

⁴⁾ 무 형 자 산 : 경영평가시스템(EMS), 내부업무시스템 등

⁵⁾ 비유동부채 : 건물 보증금, 퇴직급여충당금 등

② 2025년 추정 손익계산서

(단위: 백만원)

과 목	2023년	2024년	2025년
1. 총수익(A) ^{*1}	14,037	14,464	14,582
2. 사업비용(B) ^{*2}	10,522	10,874	10,983
3. 일반관리비(C) ^{*3}	3,017	3,365	3,399
4. 사업외수익(D) ^{*4}	158	120	85
5. 사업외비용(E) ^{*5}	-	-	-
6. 법인세차감전순이익(F=A-B-C+D-E)	666	345	285
7. 법인세등(G)	108	54	40
8. 당기순이익(H=F-G)	548	291	245

*1 총 수 익 : 출연금, 경영평가, 교육연수, 타당성조사, 청사임대 수입 등

*2 사 업 비 용 : 정책연구, 컨설팅, 경영평가, 교육연수, 타당성조사, 지방공기업발전사업비 등

*3 일반관리비 : 인건비, 기본운영비, 건물관리비,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등

*4 사업외수익 : 이자수익 등

*5 사업외비용 : 이자비용 등

[붙임 4]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금 산출 내역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획예산과, 2024. 8. 기준)

□ 산출근거

-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요구(안) 협의 결과 알림」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2190(2024.8.13)
- 「2025년 주요사업계획 - 2025년 사도 및 지방공기업 출연계획」 (지방공기업평가원)

□ 출연금 분담기준

- 직원수 · 매출액 · 자산 규모에 따른 구간별 산정 금액에 의거 분담
-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 공단은 4,000천원 감경

<출연금 산정금액 및 가중치>

구간별 산정금액 (천원)	직원수	매출액 및 자산	가중치		
			직원수	매출액	자 산
0.5	1,500	50명 이하	-	해 당 없	
1	9,000	51 ~ 150명	10억원 미만	0.3	0.5
2	18,000	151 ~ 300명	1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3	27,000	301명 ~ 1,000명	100억원이상 ~ 500억원미만		
4	36,000	1,001명 ~ 2,000명	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5	45,000	2,001명 이상	1,000억원 이상		

※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 2023. 12. 31. 공시 기준

- ☞ 공단 직원수 : 584명(비정규직 포함)
- ☞ 공단 매출액 : 350억원
- ☞ 공단 자산 : 25.3억원

□ 세부산출내역

- { 직원수 (27,000천원 × 0.3) + 매출액 (27,000천원 × 0.5) + 자산 (18,000천원 × 0.2) } - 기초 감경 (4,000천원) = 21,200천원

(단위: 천원)

해당분야	구간	산정금액(A)	가중치(B)	소 계 (A×B=C)	기초단체 감경분	총 배정액
직원수	3	27,000	0.3	8,100		
매출액	3	27,000	0.5	13,500		
자산	2	18,000	0.2	3,600		
합 계 (D)				25,200	- 4,000	21,200

[붙임 5] 2025년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요구(안) 협의 결과 알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2190호 (2024. 8. 기준)



[붙임 6] 최근 5개년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경영평가 현황

강남구 도시관리공단 (2024. 8. 기준)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평가대상연도	2019년도 실적	2020년도 실적	2021년도 실적	2022년도 실적	2023년도 실적
평가등급	다	나	다	나	나

□ 2024년 경영혁신 과제 공시: 혁신전략 체계도

혁신비전	공단 혁신을 통한 주민생활 개선
혁신목표	생산성·수익성 강화를 통한 공단의 서비스 질 향상
추진전략 및 과제	
구조개혁 추진	① 조직체계 개편
	② 혁신 TFT 구성운영
	③ ESG TFT 구성운영
재무건전성 강화	④ 재무건전성 강화 종합 계획 수립 및 운영
	⑤ 자산건전화를 위한 자산관리 강화
	⑥ 신속집행 운영
민간협력 강화	⑦ 지역문제 해결플랫폼 운영
	⑧ 민간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활성화
	⑨ ESG아이디어톤 개최
	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관리체계 개편	⑪ 반부패·청렴 고도화
	⑫ 직무중심 인사관리 고도화
	⑬ ESG경영 자문위원회 운영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418
----------	-----

제출년월일 : 2024. 10. 11.

제출자 : 강남구청장

소관부서 : 기획예산과

1. 제안이유

지방공기업평가원에 2025년도 출연 예정인 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강남구의회에 사전의결을 구하고자 함.

2. 출연개요

가. 출연기관 : 지방공기업평가원

나. 출연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p.111
-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요구(안) 협의 결과 알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2190호(2024. 8. 9.)

다. 출연내용 :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대한 경영평가 및 경영지도를 위한
재정지원

라. 출연금 : 21,200천원

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2025 요구액	2024 당초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306-01 출연금	21,200	21,200	0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21,200	21,200	0	-

3. 안건 수정 제출

가. 수정내용 : 안건명 수정

- (수정 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동의안(2024. 9. 30. 제출)
- (수정 후) 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동의안(2024. 10. 10. 제출)

나. 수정사유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지방공기업평가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 9. 30. 제322회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의 명칭 오기가 있어 기존 안건을 철회하고, 이에 갈음하여 제출함.

- 붙임 1. 산출내역 1부.
2. 관련법령 1부.
3. 지방공기업평가원 주요현황 1부.
4. 행안부 공문 1부. 끝.

[붙임1]

산 출 내 역

□ 산출근거

- 「2025년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금 요구(안) 협의 결과 알림」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2190(2024.8.13.)
- 「2025년 주요사업계획 - 2025년 사·도 및 지방공기업 출연계획」 (지방공기업평가원)

□ 출연금 분담기준

- 직원수 · 매출액 · 자산 규모에 따른 구간별 산정 금액에 의거 분담
- 기초자치단체가 설립한 지방공사 · 공단은 4,000천원 감경

<출연금 산정금액 및 가중치>

구간별 산정금액 (천원)		직원수	매출액 및 자산	가중치		
				직원수	매출액	자 산
0.5	1,500	50명 이하	-	해당 없음 0.3	0.5	0.2
1	9,000	51 ~ 150명	10억원 미만			
2	18,000	151 ~ 300명	10억원이상 ~ 100억원미만			
3	27,000	301명 ~ 1,000명	100억원이상 ~ 500억원미만			
4	36,000	1,001명 ~ 2,000명	500억원이상 ~ 1,000억원미만			
5	45,000	2,001명 이상	1,000억원 이상			

※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클린아이) 2023. 12. 31. 공시 기준

- ☞ 공단 직원수 : 584명(비정규직 포함)
- ☞ 공단 매출액 : 350억원
- ☞ 공단 자산 : 25.3억원

□ 세부산출내역

- { 직원수 (27,000천원 × 0.3) + 매출액 (27,000천원 × 0.5) + 자산 (18,000천원 × 0.2) } - 기초 감경 (4,000천원) = 21,200천원

(단위: 천원)

해당분야	구간	산정금액(A)	가중치(B)	소 계 (A×B=C)	기초단체 감경분	총 배정액
직원수	3	27,000	0.3	8,100		
매출액	3	27,000	0.5	13,500		
자산	2	18,000	0.2	3,600		
합 계 (D)				25,200	- 4,000	21,200

[붙임2]

■ 관련법령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 관련규정

○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306 - 01 출연금(p.111)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지방공기업평가원 주요현황

□ 기관현황

- 설립일 : 1992. 3. 9.
- 위 치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 인 력 : 임원 12명, 직원 75명, 기타 전문연구인력 등

□ 출연목적 : 지방공기업 각종 지원사업 수행

- 공정하고 신뢰받는 경영평가 실시
 - 경영평가등급에 따라 평가급 차등 지급
 - 부실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 사회적 가치 제고 중심의 경영평가
- 시의성 있는 정책연구를 통한 지방공기업 현안 해결
- 각종 교육을 통한 지방공기업 임직원의 역량 강화
- 경영평가 지적사항 및 당면현안에 대한 경영컨설팅으로 경영개선 유도
- 기타 지방공기업 지원사업 실시

(내부만족도 조사, 지방공기업 비즈니스센터 활성화, 각종 박람회 운영·지원 등)

□ 2025년 출연금 규모

- 총 **46.8**억원(시·도 : 10.02억원, 지방공기업 : 36.78억원)

※ 출연금 편성기준은 전년과 동일함

